

등록번호	총무과-863
등록일자	2025.01.22.
결재일자	2025.01.23.
공개구분	공개

안전보건팀 장	총무과장	사무국장	총장	
이종춘	권오현	김태완	2025.01.23. 박덕영	
협조				

## 2025년 강릉원주대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안)

2025. 1.

**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 1

## 수립배경 및 목적

- **국립대학 현업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20.1.)**
  - ①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 관리, ②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③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 업무 관련자 등 현업 종사자\*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 수립 등 법령상 의무사항 조치 필요
    -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62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설치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의무가 경영책임자(총장)에게 부여 되며,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및 벌금 부과
    - 총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 (중대재해)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공공기관의 현업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연구활동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업체 근로자 등의 사고에 적용
  
- **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b>사업주</b>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b>경영책임자</b>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b>종사자</b>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형사처분 대상 및 형량	<b>안전보건관리책임자</b>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b>경영책임자</b>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재해정의	<b>(중대재해) 산업재해 중</b> - 사망자 1명이상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b>(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b> - 사망자 1명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내용	<b>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b>  <b>안전조치</b> - 위험기계, 위험물질 사용 시 - 조작, 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 추락, 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b>보건조치</b> - 분진, 흙, 병원체 등 건강장해 - 고온, 저온, 소음 등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등 인체 부담작업 -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미유지로 발생한 건강장해	<b>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b> ①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④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 편성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⑥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⑨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b>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b> ①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② 인력, 예산 지원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 2

## 안전·보건 목표, 비전 및 경영방침

### 비전

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목표

산업 안전·보건 역량강화로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

### 전략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추진과제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이행

2.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여부 점검(수시·정기)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5.

종사자 의견 청취, 수렴 및 개선여부 점검

6.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점검

7.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8.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

## < 안전·보건 경영방침 >

강릉원주대학교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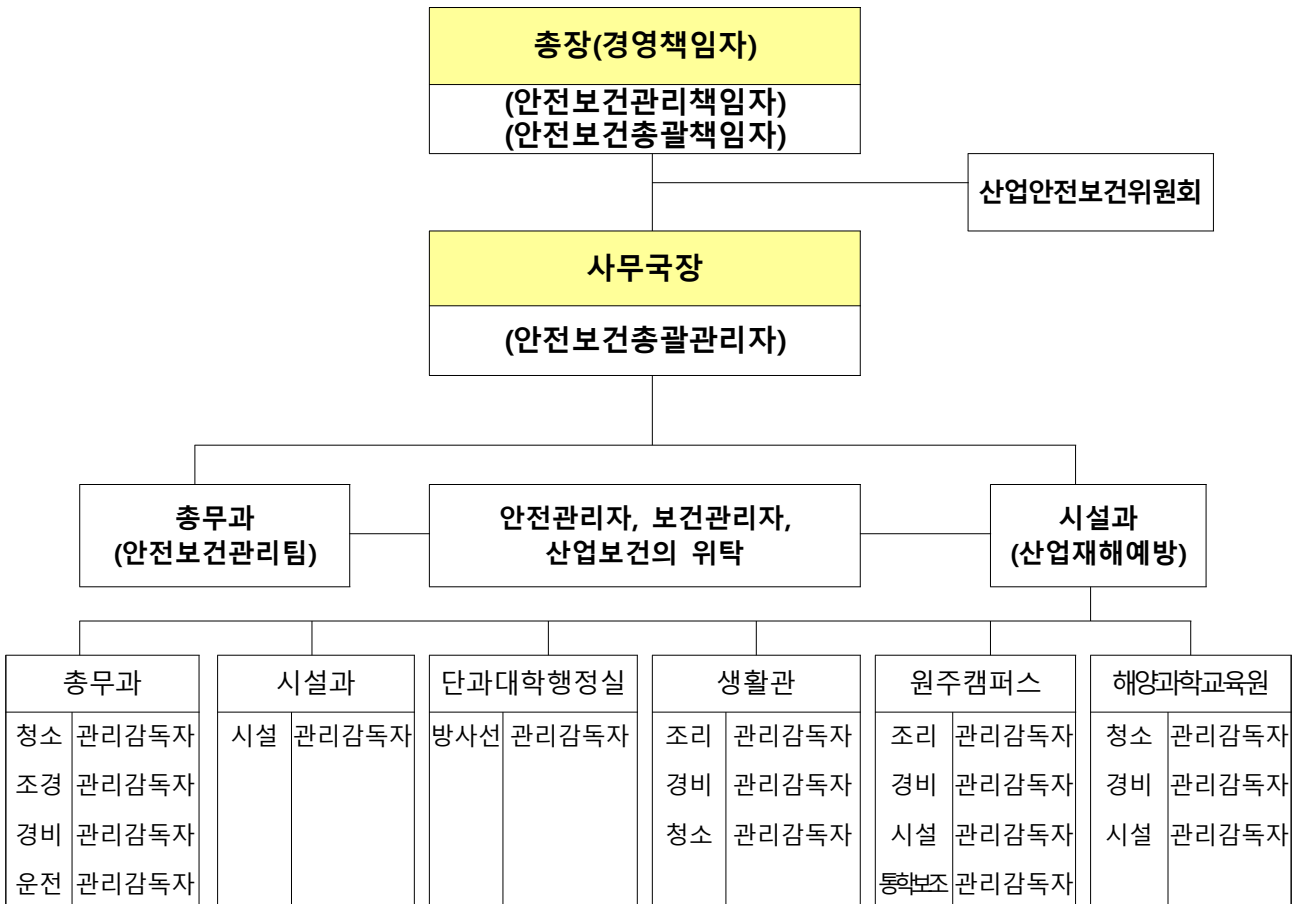
1. 모든 구성원의 생명보호와 건강·안전 증진을 위해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안전·보건 목표로 삼는다.
2.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법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책임과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3. 강릉원주대학교는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조직의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4. 모든 구성원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제거하는 등 재해예방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5. 도급·용역·위탁 등의 협력관계자가 우리 대학의 안전보건 방침과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6. 모든 구성원은 상호 존중과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 3

##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의 구축 및 이행

### □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 사무국장을 안전보건총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총괄·지도하도록하며, 현업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과·실장이 사무국장을 보좌(관리감독자 지휘 등)하도록 함

## □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역할
경영책임자(총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사업 대표 및 총괄
안전보건총괄관리자 (사무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총괄·지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에 대한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현업업무 담당팀장, 담당자)	현업업무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조의 업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8조의 업무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9조의 업무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전문기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의 업무 *산업보건의 전문기관에 위탁

## 4

### 세부추진계획

## 1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실행

#### 【 시행령 제4조제1호 】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산업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설정한 강릉원주대학교 안전·보건 경영방침 현장 정착 및 홍보 강화
  -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전 직원 및 모든 도급 근로자의 인식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상시 게시 등 기관별 홍보 지속 실시
- ※ 강릉원주대학교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22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22.9.)

**< 안전·보건 경영방침 요약 >**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 실천

- 구성원의 생명보호와 건강·안전 증진을 위해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안전·보건 목표함
-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법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책임과 의무 이행
-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조직의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 지원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제거하는 등 재해예방과 개선을 위한 활동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협력관계자가 우리 대학의 안전·보건 방침과 요구사항을 준수
- 구성원은 상호 존중과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조성

## 2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

**【 시행령 제4조제3호 】**

-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 확인·개선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 조치 실시

- 재해예방의 장소별, 직종별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정기·수시평가)

\*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호)

-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는 별도 시행

###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

#### 【 시행령 제4조제4호 】

- ▶ 재해 예방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 (예산편성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재해 예방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 25회계연도의 경우,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관공통 용역비 등 편성하여 우선 집행하고 부족할 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 확보

\* 유해·위험 요인 해소에 필요한 예산 편성

###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 시행령 제4조제5호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 ▶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②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권한을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평가기준을 마련 엄정한 평가 실시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수탁 기관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3호)」에 따라 관리

## 5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사항 점검

### 【 시행령 제4조제7호 】

-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이행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 ①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②필요 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 반기1회 이상
- 대학 종사자의 의견청취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를 통한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여부 점검
  - 매년 6월, 12월을 안전·보건 달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실시

## 6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이행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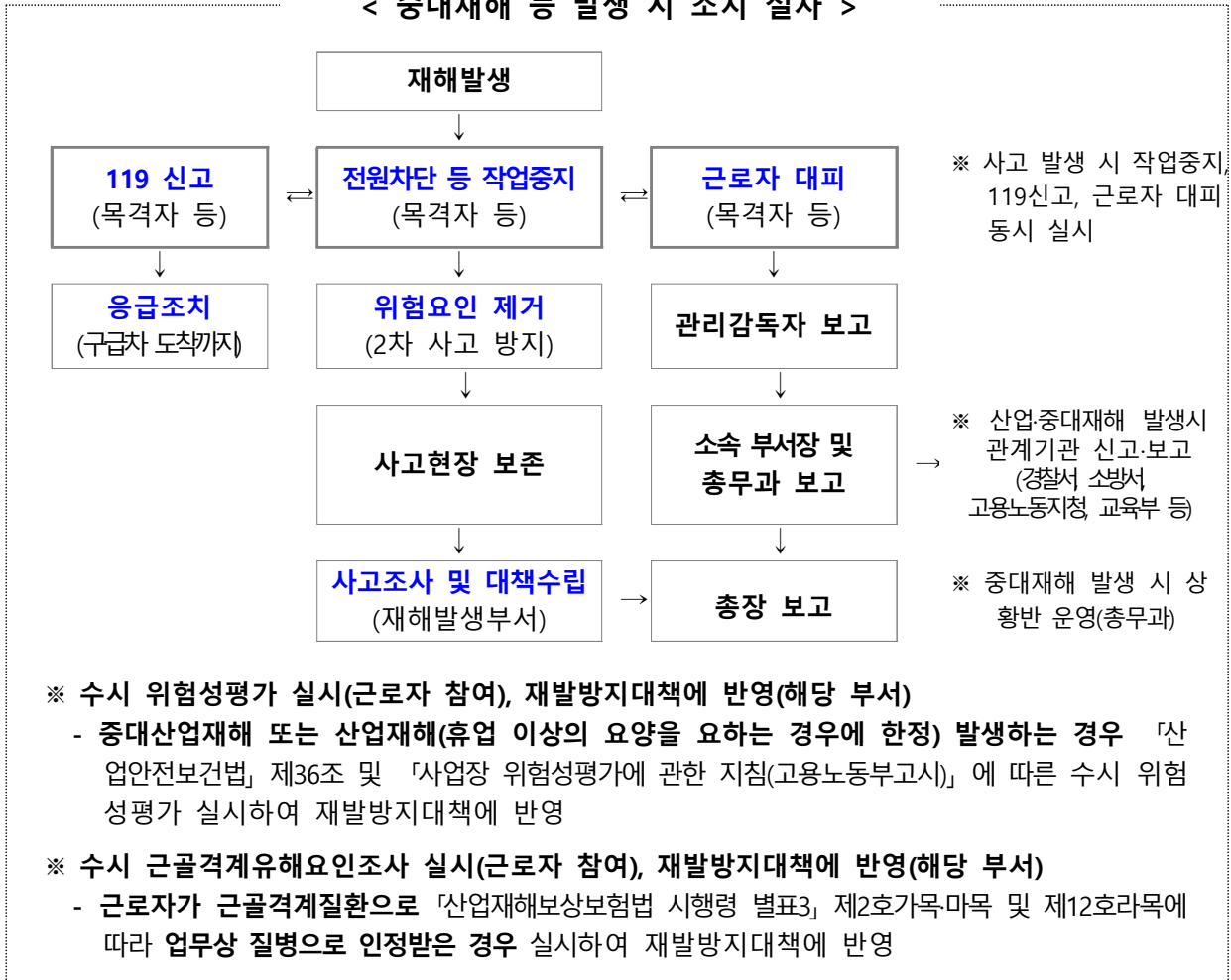
### 【 시행령 제4조제8호 】

- ▶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주요내용)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종사자에게 매뉴얼 공유
  -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기 마련(' 22.5.)한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 대비 매뉴얼' 을 활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위험 대비 매뉴얼 이행 및 점검, 반기 1회 이상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

**<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조치 절차 >**



**7**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

**【 시행령 제4조제9호 】**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 도급 등 시행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능력과 기술의 수준 등을 평가하여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 (종사자) 근로자(공무원 포함),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재해를 가한 자의 입찰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 준수

- (수의계약) 업무수행 및 산재예방 조치 능력 등 평가 필요, 단 A/S 등 일회성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 가능

◇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의 안전·보건 관련(예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경비)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 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9조(간접공사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2. 공사기간의 적정성	- 공사계획의 적정성 - 공사기간의 단축효과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10~30%	적정(100%) 보통(50%) 부적정(0)
3. 안전관리 역량평가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10~40%	적정(100%) 보통(50%) 부적정(0)

○ 교육기관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도급업무 발굴, 기 마련한 매뉴얼을 개선·보완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급 등에 활용토록 지원

**8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사항 점검**

**【 시행령 제5조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이상 점검

· 의무 미이행 및 교육 미실시에 대하여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되는 법령으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

-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점검·모니터링 실시
  - 관계 법령의 법적 의무와 의무적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미 이행에 대하여 이행에 필요한 조치 필요
    -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 점검 및 교육 미이행시 교육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 각각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해당법령에 의해 발생

## 5

### 향후 추진일정

#### □ 산업안전보건 교육 점검

- 전문기관 및 관리감독자를 통한 현업근로자 교육 실시 점검: 분기별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은 별도 추진

#### □ '25년 안전 보건 관계 법령 이행 사항 점검

- 안전 보건 관계법령 이행 사항 점검: 반기 1회(6월, 12월)
  - \* 전문기관 위탁 위험성 평가 시 점검 대체

#### □ 종사자 의견 청취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 안전보건 게시판을 통한 의견 수렴: 수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분기별 1회 이상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

법령명	관련내용	관리부서
<b>종사자 안전 보건 관계 법령 (4)</b>	<b>산업안전보건법</b>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 교육, 위험성평가, 도급·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전부서
	<b>안전보건규칙(약칭)</b>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 작업장관리, 보호구, 관리감독자 직무, 추락·붕괴 위험방지 등	전부서
	<b>연구실안전법(약칭)</b> ◦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 연구실책임자 지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등	연구실안전관리센터
	<b>폐기물관리법</b>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안전기준규정(시행규칙제16조의3) : 보호장구의 지급, 3인 1조의 작업 등의 안전기준 등	총무과 원주행정지원실
<b>시설물 안전 관계 법령 (10) 시설물 안전 관계 법령 (10)</b>	<b>소방시설법(약칭), 화재예방법(약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b> ◦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사항 규정 : 소방용품 내용연수, 피난시설, 방염,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 등	총무과 시설과 원주행정지원실 강릉학생생활관 원주학생생활관 부설유치원
	<b>승강기안전관리법</b> ◦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안전관리자, 보험가입, 자체점검, 안전검사 등	시설관 강릉학생생활관 원주학생생활관 부설유치원
	<b>시설물안전법(약칭)</b>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 예방 : 안전점검, 재난예방 안전조치,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과
	<b>교육시설법(약칭)</b>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 교육시설안전인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등	시설과
	<b>석면안전관리법</b>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 석면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등	시설과
	<b>전기안전관리법</b> ◦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등	시설과
	<b>건설기술진흥법</b> ◦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안전 확보 등의 사항 규정 :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공사감독자 감독 의무, 공사현장 점검 등	시설과
	<b>위험물안전관리법</b>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안전교육 등	연구실안전관리센터
	<b>화학물질관리법</b> ◦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화학물질 발생 사고시 신속한 대응 : 취급자 개인보호장구 착용, 진열량·보관량 제한, 유해화학물질 표시 등	연구실안전관리센터
	<b>원자력안전법</b> ◦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 :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장해방지조치, 교육훈련 등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강릉단과대학행정실 (치과대학)